

#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024년도 기업지원 공고(1차)

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5일

산업기술통상자원부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## 1. 지원개요

- **(사업명)**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·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
- **(사업목적)**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- **(지원규모)** 직접지원
  - \* 사전협의를 통해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프라로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
- **(지원기간)** 2024. 10. ~ 2024. 12. (지원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)

## 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이차전지산업 전·후방 연관 소재·부품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
  - \*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 지원
    - 입주 예정기업은 지원기간 내 입주 증빙자료 제출 필수  
(관련 :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(기업 등의 유치지원))
  - \*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, 중견기업 우선 지원
- 이차전지 소재·부품의 실증화 및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

### 3. 세부 지원내용

#### ○ 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

지원구분	프로그램	지원항목	비고
기술서비스 (시제품제작 지원)	프로그램 1	· 단전지(coin half cell) 제작 지원 * 지원 건당 최대 6cell * 전극제조, 전지조립 공정 지원가능	* 각 항목은 초안 접수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* 프로그램 1건당 1개의 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 (ex. 동시 지원시 시제품 제작 1건, 시험평가인증 1건 총 2개 신청서 제출)
	프로그램 2	· 파우치셀(pouch full cell) 제작 지원 * 지원 건당 최대 20cell * 전극제조, 전지조립 공정 지원가능	
기술서비스 (시험평가인증 지원)	프로그램 3	· 단전지(coin half cell) 평가 지원 * 지원 건당 최대 6cell * 전기화학성능 평가	
	프로그램 4	· 파우치셀(pouch full cell) 평가 지원 * 지원 건당 최대 10cell * 전기화학성능 평가	

### 4. 신청방법

○ 지원프로그램별 사전협의를 위한 신청서 초안 이메일 제출

지원기관	담당자명 (직위)	전화번호	이메일	주소
울산테크노파크	강정진 (연구원)	052-219-0943	kjj2238@utp.or.kr	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,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

○ 담당자와 사전협의 완료 후 [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\(platform.utp.or.kr\)](http://platform.utp.or.kr)을 통해 전체 서류 제출

\*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이며, 사이트 내 매뉴얼 참고

\* 전체 서류 중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

## 5. 제출서류

제출서류		제출여부
① 신청서(서명 또는 날인본)	원본	필수
② 세부계획서	사본	
③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	원본	
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	원본	
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원본	
⑥ 사업자등록증 * 울산지역 내 기업 여부 확인으로 우선지원	사본	
⑦ 최근 3년간('21-'23) 재무제표 * 재무제표 미발행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(가결산도 불가할 시 부가세납입증명을 회계사무소 날인 후 제출)	사본	
⑧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	사본	
⑨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	사본	
⑩ 기업역량 확인 가능한 서류(선정평가 시 활용) * 벤처기업지정서 *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* MAINBIZ/INNOBIZ 인증서 *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 등) 등록증 또는 출원증 * 국내외 표준인증서(시스템인증, 제품인증 등) * 기타 기업역량 확인 서류	사본	해당 시
⑪ 중소·중견기업확인서 * 중소·중견기업 여부 확인으로 우선지원		

## 6. 선정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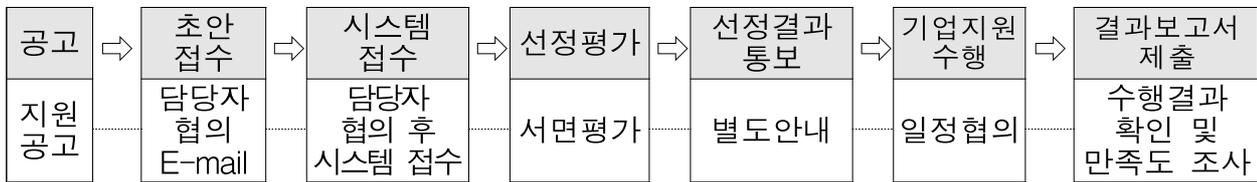
- **(평가방법)** 외부전문가(3~5인 내외)로 구성된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**(평가기준)** 제출서류 및 선정(서면)평가를 토대로 지원의 필요·적정성, 사업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, 기대효과(매출, 고용 창출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 60점 이상의 지원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**(선정결과)**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
  - ※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

## 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지원선정시 성과관리기관(5개년)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 필수
-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 있음
-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

## 8. 추진일정

- 신청서접수 : 2024년 9월 25일(수) ~ 2024년 10월 18일(금) 까지



## 9. 사전 지원 제외 대상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 결산 감사의견 “의견거절” “부적정”인 경우
-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
## 10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협의를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
  -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 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 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6.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

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-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
-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

## 11. 관련 법령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 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  -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 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 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  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  -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

## 12. 문의처

지원기관	담당자명 (직위)	전화번호	이메일	주소
울산테크노파크	강정진 (연구원)	052-219-0943	kjj2238@utp.or.kr	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,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

붙임 1. 사업신청서 양식 1부. 끝.